

최소 요건 [\[사업 및 전문업법 \(BPC\) 7331\]](#)

신청자가 다음 항목을 위원회에 모두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a) 작성을 완료한 신청서 양식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수료.

(b) 다른 주에서 실무를 위해 발급받아 현재 사용중인 면허의 증빙 서류(증명서)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면허는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면허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 정보

유용한 힌트:

- www.breeze.ca.gov에서 온라인으로 상호주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신청 현황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먼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었는지 확인해주시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6주가 지난 후 이메일을 통해 귀하의 신청 현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에 관해 문의하시려면 barbercosmo@dca.c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신청서와 함께 첨부 파일을 빠짐없이 제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반환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됩니다.

- 위원회에서 귀하의 신청을 승인하면, 귀하의 파일이 시험/면허 공급업체 PSI로 전송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증 수령에 관한 지침과 함께 응시자 정보 안내서가 귀하에게 전송됩니다.
- 새 면허증을 수령하려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분포한 13개 PSI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면허증은 발급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요금은 \$50.00입니다.

유죄 판결: 미국, 주, 지방 사법권 또는 외국의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신청자는 반드시 [유죄 답변/선고에 관한 정보공개서](https://www.barbercosmo.ca.gov/forms_pubs/forms/disc_crimpleas.pdf)를 작성해야 합니다(https://www.barbercosmo.ca.gov/forms_pubs/forms/disc_crimpleas.pdf).

징계 처분: 본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주 및 다른 주의 기타 공권력 또는 외국에서 전문직이나 직업 면허 혹은 등록이 거절, 정지, 취소, 보호관찰 또는 그 밖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에 관한 정보공개서](https://www.barbercosmo.ca.gov/forms_pubs/forms/disc_discact.pdf)를 작성해야 합니다(https://www.barbercosmo.ca.gov/forms_pubs/forms/disc_discact.pdf).

거절 사유: 캘리포니아에서는 각 신청자의 면허 교부 적격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원회는 [사업 및 전문업법 1.5부 2장 480항](#)을 근거로 면허 교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속 처리 대상 자격:

미합중국 군대 명예 전역 군인

귀하께서 미군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뒤 명예 전역한 경우, 이·미용 위원회는 면허 교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 및 전문업법 \(BPC\) 115.4항](#))

면허 교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명예 전역을 했거나, 명예 전역 예정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미군에서 발급받은 공식 명령.

현역 군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 동반자 ([AB 1904 및 SB 607](#))

이미용 위원회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 및 동거 동반자가 다른 주, 관할 구역 또는 지역에서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현역 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상호주의 면허 교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면허 수수료 \$50를 면제해야 합니다.

면허 교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동거 동반자의 현역 군인 신분을 보여주는 미군에서 발급한 명령
- 군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 동반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결혼 허가서, 동거 동반자 양식, 배우자/동거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는 군인 신분증)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허가를 받거나, 망명 신청이 허가되었거나, 특별 이민 비자를 발급받음

BPC 135.4항은 위원회가 아래 설명된 특정 신청자에 대한 초기 면허 교부 처리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속하게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문장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미국 법전 제8편 1157항에 의거하여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 허가를 받았다.
- 미국 법전 제8편 1158항에 의거하여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미국 법무장관이 망명을 허가했다.
- 특별 이민 비자가 있으며, 이라크인 및 아프가니스탄 번역가/통역가 또는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대표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공법 110-181의 1244항, 공법 109-163, 또는 공법 제111-8 F부 제6편 602(b)항에 의거하여 신분을 부여받았다.

신속한 신청 처리를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 검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국/출국 기록으로, "RE"(난민)이나 "AY"(망명자) 혹은 난민이나 망명자로 지정하는 기타 정보와 같은 승인 신분 코드가 적힌 양식 I-94.
- "SI" 또는 "SQ"가 포함된 특별 이민 비자
- 난민이나 망명자로 입국 허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범주 지정이 있는, 보통 "그린 카드"로 알려진 영주권 카드(양식 I-551).
- 신청자가 면허 교부 신속 처리 대상 자격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보증하는 관할 법원의 명령 또는 기타 증빙서류.

신청 체크리스트

아래는 상호주의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서 및 근거 자료 목록입니다:

- ID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을 포함합니다(신분증에 적힌 이름은 이 신청서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상호주의 신청서 모든 필드를 작성하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모든 페이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수수료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신청서를 참조하십시오. 금액은 면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증명서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타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면허 교부를 받은 주에 연락하여 캘리포니아로 증명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면허 교부를 받은 주에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 공개서(필요한 경우)
유죄 판결:
https://www.barbercosmo.ca.gov/forms_pubs/forms/disc_crimpleas.pdf
징계 처분:
https://www.barbercosmo.ca.gov/forms_pubs/forms/disc_discact.pdf
- 군인 서류(신속 처리 요청 시) 현재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군 현역 군인과 결혼했거나, 동거 관계 또는 기타 법적 연합을 맺고 있는 신청자. 필수 서류는 면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현역 군인 또는 미군에서 명예 전역한 신청자.
- 난민 서류(신속 처리 요청 시) 망명 또는 난민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양식 I-94, 특별 이민 비자, 영주권 카드 및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